

명예교수에 관한 규정

(제정 1999. 12. 14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 절차 및 처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2조(자격 및 제한)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2.27.>

1. 본교에 조교수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 <개정 2012.7.22>
2. 본교에 재직하고, 그 재직 기간 중 본교의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이거나 업적이 현저한 자

② 명예교수로의 추대 연령은 법정 정년 연령으로 한다. <신설 2014.2.27.>

③ 제1항의 내용을 충족하여도 본교에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신설 2011.3.1>

제3조(절차) ① 명예교수 추대절차는 해당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6.3.1., 2020.4.14.>

② 명예교수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4조(구비서류)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소속 부서장이 작성한 교육, 연구 및 봉사업적에 근거한 추천서
2. 연구업적 조서
3. 소속 전공 주임의 공적 조서
4. 이력서
5. 그 밖에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5조(직위)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직위는 종신으로 한다.

②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가 법규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명예교수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6조(처우) 명예교수에 관한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3-2-9-2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